

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00480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0048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406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강인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혁준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문고운, 조영도

변론 종결 2021. 5. 26.

판결 선고 2021. 7.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406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515/2,3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515/2,35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62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62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87,996,8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87,996,872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515/2,35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9. 13. 접수 제639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4,554,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2행의 "제1 토지"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하고, 나머지 토지도 순서대로 '제O 토지'라고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740,326,506원"과 각주 1)을 "528,061,000원¹⁾과 아래 각주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감정인 K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각주 2) 포함)를 아래(각주 2), 3) 포함)와 같이 고친다.

』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합계(790,000,000원, 그 중 B 소유 부동산 부분 561,021,618원)가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717,728,000원, 그 중 B 소유 부동산 부분 528,061,000원) 보다 다액인바, 피고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약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 채권과 상계하고 이 사건 제2 공동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의 범위는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투자수익금으로(피고는 C은 위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투자수익금뿐만 아니라 D 월 매출액의 3%인 6,875,000원도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 월 매출액의 3%가 6,875,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투자금반환 채무액은 184,828,767원²⁾ 3) 이 되는데, 위 184,828,767원과 이 사건 제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억 8,000만 원을 합한 664,828,767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 717,728,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각주 3), 4), 5), 6) 포함)를 아래(각주 4), 5), 6), 7) 포함)와 같이 고친다.

』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제3 토지 중 B 지분, 제4 토지의 시가 합계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1. 2. 19.을 기준으로 219,760,000원⁴⁾ 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액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유사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제3 토지 중 B 지분, 제4 토지에 관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219,760,000원에서 이 사건 제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제4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 131,763,128원(= 480,000,000원⁵⁾ × 137,536,000원⁶⁾ / 501,030,000원⁷⁾ , 원 미만 반올림)을 공제한 87,996,872원(= 219,760,000원 - 131,763,128원)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위 87,996,872원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보다 적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제3 토지 중 B 지분과 제4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87,996,8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87,996,8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구자현

판사박성준

판사천지성

별지

- 1) 제1 토지 중 B 지분 시가 340,454,000원 + 제2 토지 시가 23,040,000원 + 제3 토지 중 B 지분 시가 27,031,000원 + 제4 토지 시가 137,536,000원
- 2)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5% × 339/365(2017. 9. 13.부터 2018. 8. 17.까지)
- 3) 나아가 을다 제6호증의 2에는 "실제 채무액 9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제3 토지 중 B 지분 40,472,000 + 제4 토지의 시가 179,288,000원
- 5) 이 사건 제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 6) 제4 토지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시가
- 7) 제1 토지 중 B 지분, 제2, 4 토지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시가(340,454,000원 + 23,040,000원 + 137,536,000원)